

# 「2023년 다문화 평생교육 사업」 상반기 공고

- “함께하는 다문화 시민교육 프로그램” 운영 지원 -

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도민의 일상 속 모두가 함께하는 다문화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.

이에 2023년 다문화 평생교육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2월 28일

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

## 1. 사업개요

가. 프로그램 명 : “함께하는 다문화 시민교육 프로그램”

나. 공고 및 접수 : 2023년 2월 28일(화) ~ 3월 27일(월)

다. 사업추진 기간 : 선정일로부터 ~ 2023년 11월까지

라. 선정발표 : 2023년 4월 5일(수) 예정/ 홈페이지 게시

※ 심사결과 등 상황에 따라 선정 기관 수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

마. 지원대상 : 지역 대학·기관·단체, 협동조합 등

바. 지원규모 : 4개 기관(프로그램 당 5백만원 이내)\*자부담 자율 편성

## 2. 사업내용

### 가. “함께하는 다문화 시민교육 프로그램” 지원 사업

구 분	내 용											
지원대상	◦ 지역 대학·기관·단체, 협동조합 등											
프로그램 운영내용	◦ 공통과정 ‘함께하는 다문화 시민사회 교재’ 강좌 필수 운영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공통</th> <th>특화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주제</td> <td>다문화 시민교육 <b>(필수) 진흥원 개발 교재</b></td> <td>다문화 관련 체험, 견학 등</td> </tr> <tr> <td>내용</td> <td>「함께하는 다문화 시민사회」 교재 활용 프로그램 구성</td> <td>다문화를 주제로 한 특화 프로그램 (체험/견학 등 1회 이상) 등 구성</td> </tr> <tr> <td>구성</td> <td colspan="2">                     ① 교육 시간 및 인원 : 최소 10차시 이상(3개월 이상)/ 최소 24시간 이상 편성 / 3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② 대 상 : 도민 성인 누구나 청년, 주부, 중장년층, 다문화 가족 등                      ③ 교육방법 : 이론 + 참여형 교육(탐방, 체험학습 등) 병행                      ④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(공통) 「다문화 시민교육」 교재 강의 + (특화) 다문화 관련 체험(답사/견학) 등  <b>※ (필수) 공통과정 ‘함께하는 다문화 시민사회 교재’ 관련 강좌 2차시 이상 필수 구성</b>                      ⑤ 교 육 비 : 학습자에게 프로그램 무상 제공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공통	특화	주제	다문화 시민교육 <b>(필수) 진흥원 개발 교재</b>	다문화 관련 체험, 견학 등	내용	「함께하는 다문화 시민사회」 교재 활용 프로그램 구성	다문화를 주제로 한 특화 프로그램 (체험/견학 등 1회 이상) 등 구성	구성	① 교육 시간 및 인원 : 최소 10차시 이상(3개월 이상)/ 최소 24시간 이상 편성 / 30명 이상 ② 대 상 : 도민 성인 누구나 청년, 주부, 중장년층, 다문화 가족 등 ③ 교육방법 : 이론 + 참여형 교육(탐방, 체험학습 등) 병행 ④ 교육내용 (공통) 「다문화 시민교육」 교재 강의 + (특화) 다문화 관련 체험(답사/견학) 등 <b>※ (필수) 공통과정 ‘함께하는 다문화 시민사회 교재’ 관련 강좌 2차시 이상 필수 구성</b> ⑤ 교 육 비 : 학습자에게 프로그램 무상 제공
구분	공통	특화										
주제	다문화 시민교육 <b>(필수) 진흥원 개발 교재</b>	다문화 관련 체험, 견학 등										
내용	「함께하는 다문화 시민사회」 교재 활용 프로그램 구성	다문화를 주제로 한 특화 프로그램 (체험/견학 등 1회 이상) 등 구성										
구성	① 교육 시간 및 인원 : 최소 10차시 이상(3개월 이상)/ 최소 24시간 이상 편성 / 30명 이상 ② 대 상 : 도민 성인 누구나 청년, 주부, 중장년층, 다문화 가족 등 ③ 교육방법 : 이론 + 참여형 교육(탐방, 체험학습 등) 병행 ④ 교육내용 (공통) 「다문화 시민교육」 교재 강의 + (특화) 다문화 관련 체험(답사/견학) 등 <b>※ (필수) 공통과정 ‘함께하는 다문화 시민사회 교재’ 관련 강좌 2차시 이상 필수 구성</b> ⑤ 교 육 비 : 학습자에게 프로그램 무상 제공											
사업비 사용기준 <small>※ 재위탁 불가</small>	◦ 24시간 이상 / 강사료는 1회 최대 2시간 이내 지급 가능 ◦ (사업비 사용 기준)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직접경비 - 강사료, 홍보비, 교재비, 체험학습비, 재료비											

## 3. 신청 및 접수

가. 신청기간 : 2023. 3. 17.(금) ~ 3. 27.(월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나. 신청방법 : 이메일(lifelongel@naver.com) 접수

다. 제출서류 : 신청공문,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

라. 문 의 처 : 평생교육팀 공모사업 담당자(☎ 061-285-9488)

## 4. 선정 방법

가. 심사 방법 : 자체 심사위원회 전문가 심사단을 통한 '사업 계획서' 서면 심사(필요 시 현장실사 가능)

나. 선정 기준 : 사업 심사 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하며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※ 단, 심사 결과 심사위원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

다. 평가 내용 : 기관(단체)역량 / 사업내용/ 파급효과 /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

### 지원 불가 항목

- 경상운영비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공공요금 등
- 자산취득 경비: 사무기기 등 자산성 물품 구입비 등
- 업무추진비: 급식비, 사례비, 접대비 등
- 행사 부대 경비: 식비, 경품비, 기념품비, 단체복, 단순 다과비 등 ※자부담 편성 가능

## 라. 지원 제외 대상

### 지원 제외 대상

-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
- 특정지역, 기관·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
- 정치적 목적,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
-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·개인(관련 법령·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)
- 소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
-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고, 사업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보조금 실적·정산보고서가 완료하지 않은 기관·단체

#### \* 사업비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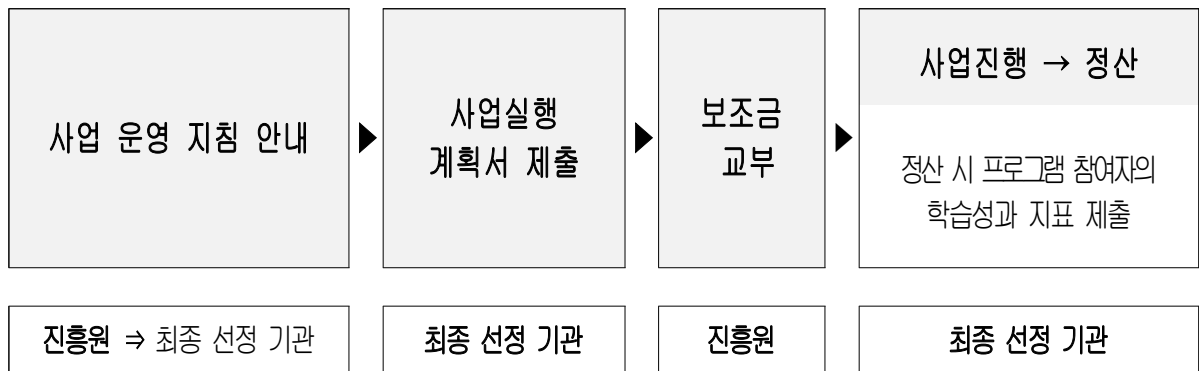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
-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

## 5. 향후 일정

가. 최종 결과 공고 : 2023. 4. 5.(수) 예정 /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

※ 탈락 기관·단체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

나. 선정 후 일정



다. 사업비 교부 및 사업평가

### 사업비 교부 및 사업평가

- 선정 기관(단체)은 지원 결정금액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와 사업비 신청서 제출
- 사업완료 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
-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(현장점검)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하고, 정산결과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**전액 환수함**

## 6. 유의사항

가. 심사 등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나.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

- 다. 심사에 따라 적합한 기관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라. 선정기관(단체)은 사업 관련 교육 참석해야 하며, 현황 현장 점검 등 우리원이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함
- 마. 최종 사업선정 후 진흥원의 제안사항에 따라 사업실행계획서는 보완될 수 있음
- 바. 지원금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우리원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 등에 따라야 함
- 사. 기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·형사상 책임 및 제반비용 처리는 해당 기관·단체에서 부담함
- 아. 다음의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함

사업비 중단 및 회수

- 주제와 관련 없는 항목이나 집행 불가항목에 사용한 경우
- 운영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
- 정산서의 미제출, 허위증빙 등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-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

- 자. 공모사업 강사진, 학습자에게 사진 촬영 및 녹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필수
- 차. 우리원에서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